

忠清北道丹陽郡梅浦公害地域移住對象者에對한道稅課稅免除에關한條例(案)

檢 討 報 告

1. 提出者 : 忠清北道知事

2. 提出日字 및 回附日字

가. 提出日字 : 1992年 7 月 3 日

나. 回附日字 : 1992年 7 月 3 日

3. 提案理由

- 丹陽郡 梅浦地域內 公害被害住民의 移住對策推進과 移住民의 生活安定을 支援하기 爲하여 道稅의 課稅免除條例를 制定코자 함.

4. 主要骨子

- 免除對象 : 丹陽郡 梅浦地域內 公害被害住民의 移住對策으로 移住하는 移住者가 支給받은 補償金으로 忠清北道 管內에서 對替取得하는 住宅地, 農耕地 및 住宅
- 免除稅目 : 取得稅, 登錄稅

5. 檢討意見

忠清北道丹陽郡 梅浦公害地域 移住對象者에 對한 道稅課稅 免除에 關한 條例案을 檢討한바,

土地收用法等에 依하여 土地等を 收用할수 있는 事業者에게 不動産이 買收 또는 收用되었을 경우 收用對象者가 對替取得하는 不動産에 對하여는 地方稅法 第 109條 및 同法 第127條의 2 規程에 依하여 取得稅 및 登錄稅를 免除하고 있는바,

丹陽郡 梅浦地域의 세멘트工場 周邊의 公害地域에 居住하던 住民이 公害로 因하여 自意 및 他意로 移住될 境遇에도 不動産 補償金額 限度로 對替取得하는 不動産에 對하여 取得稅 및 登錄稅를 免除하여 줌은 衡平 課稅의 原則을 實現코자 하는 것으로서 本 制定條例案은 妥當하다고 思料됨.

添 附 : 忠清北道 丹陽郡 梅浦 公害地域 移住對象者에 對한 道稅課稅 免除에 關한 條例案

關係法令拔萃

地方稅法

第109條(土地收用등으로 인한 對替取得에 대한 非課稅) ①土地收用法, 都市計算法등 關係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土地등을 收用할수 있는 事業 認定을 받은 者 (觀光振興法에 의한 事業施行者를 포함한다)에게 不動產 이 買收 또는 收用되거나 撤去된 者 (公共用地的 取得및 損失補償에 관한 特例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한 移住對策의 대상이 되는 者를 포함 한다)가 당해 事業認定告示日부터 그 補償金을 마지막으로 받은 후 1年(事業認定을 받은者의 사정으로 代替取得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 이 가능한 날부터 1年)이내에 이에 代替할 不動產을 取得 (事業認定 告示日이후에 契約을 체결한 경우에 한한다) 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取得稅를 賦課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不動產價額 의 合計額이 종전의 不動產價額의 合計額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 액에 대하여는 取得稅를 賦課하며, 초과액의 算定基準과 方法등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86. 12. 31, 法3910, 90. 12. 31, 91. 12. 14 >

②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第112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課稅對象을 취득한 경우와 大統領令이 정하는 不在不動產 所有者가 不動產을 代替取得하는 경우에는 取得稅를 賦課한다.<新設 90.12.31, 91.12.14>

③ 土地區劃整理事業法의 規定에 의한 土地區劃整理事業과 都市計算法의 規定에 의한 再開發事業 및 開發豫定區劃造成事業의 施行으로 인하여 所有者가 환지받는 경우와 事業施行者가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取得稅를 賦課하지 아니한다.

<全文改正 86.12.31, 法3878>

第127條의 2 (土地収用등으로 인한 代替取得 登記에 대한 非課稅)

① 土地収用法, 都市計画法등 關係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土地등을 収用할 수 있는 事業認定을 받은 者(觀光振興法에 의한 事業施行者를 포함한다)에게 不動産(土地·建築物·漁業權 및 鑛業權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이 買収 또는 収用되거나 撤去된 者(公共用地의 取得 및 損失補償에 관한 特例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한 移住對策의 대상이 되는 者를 포함한다)가 당해 事業認定告示日부터 그 補償金を 마지막으로 받은 후 1年(事業認定을 받은 者의 사정으로 代替取得이 불가능한 경우는 취득이 가능한 날부터 1年)이내에 이에 代替할 不動産을 취득한(事業認定告示日이후에 契約을 체결한 경우에 한한다) 때에는 그 登記에 대한 登錄稅를 賦課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不動産補償額의 合計額이 종전의 土地 또는 建築物價額의 合計額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登錄稅를 賦課하며 초과액의 算定基準과 方法등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改正 90.12.31, 91.12.14 >

②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第112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課稅對象을 취득한 경우와 大統領令이 정하는 不在不動産 所有者가 不動産을 代替取得하는 경우에는 登錄稅를 賦課한다. <新設 90.12.31, 91.12.14>

< 本條新設 86.12.31, 法3878 >